안전은 권리입니다

2019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2019. 10. 2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목 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자료 ····· 1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방향 ····· 2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23

Ⅱ. 평가목적 및 개요 ····· 25

Ⅲ. 세부 추진계획 ····· 27

Ⅳ. 평가체계 및 지표구성 ····· 31

참고자료 ····· 77

참고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7호 ····· 79

참고 2.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 ····· 85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자료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개최 개요

1 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안전사고*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 및 사고예방을 위한 **역할강화** 요구

* KTX 강릉선 탈선('18.12.8.), 태안발전소 협착사고('18.12.10.) 등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의 수준**을 **평가,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공공일터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설명회** 개최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19.3.19.),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기재부, '19.3.28.) 후속조치

2 설명회 개요

○ **(일시)** **'19.10.25.(금) 14:00 ~ 16:00**

○ **(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중앙로 242 소재)

○ **(참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및 **공기업·준정부기관***(128개, 참고 1 참조) **안전관리업무 담당 실무자**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경영평가 편람'의 평가유형 구분 참고

○ **(내용)** 2019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평가지표(안) 등 **평가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3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설명회 안내	사회(안전보건공단)
14:05~14:10 (5')	·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14:10~15:00 (50')	· 평가 추진방향 · 평가 개요, 평가 방법 및 세부 평가지표 등 설명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지원단 지원1팀장
15:00~15:10 (10')	· 휴식	-
15:10~16:00 (50')	· 평가관련 질의·응답	참가자 전원

사고사망감소! 함께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

공공기관 평가지원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은 권리입니다

CONTENTS

1 추진경과

2 평가방향 및 평가전략

3 평가근거 및 개요

4 평가지표 체계 및 주요내용

5 평가내용 및 향후 일정 등

2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은 권리입니다

CONTENTS

1 그간의 추진경과

3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추진경과

안전은 권리입니다

1.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사망 : '18.12.11
2.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 '18.12.17
3. 산안법(가칭 김용균법) 전면 개정안 국회통과 : '18.12.27
4. 공공기관 작업장안전 TF 운영 (국조실) : '19.1~3월
5.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국조실) : '19. 3.19
6.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기재부) : '19.3.28
7.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기재부) : '19.3.28
8.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노동부) : '19.9.23
9. 2019년 정부 경영평가 편람 확정 "안전 및 환경" (기재부) : '19.10.7

4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안전은 권리입니다

CONTENTS

2 평가 방향 및 평가 전략

5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수준평가 방향

안전은 권리입니다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이행수준(정부부처 합동, '19.3.19.)
-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이행수준(기재부, '19.3.28.)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준수여부(기재부, '19.3.28.)
- 산업안전보건법 및 주요 안전법령 안전관련 요구사항 준수여부
- 기타 산업안전 등 안전관련 정부의 정책 이행수준 등

6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안전은 권리입니다

평가 전략(안)

- 최초평가에 따른 혼선 최소화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단계적 대상 확대

비 전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일터 조성
목 표	'22년 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60%) 감소
방 침	안전 중심 경영 패러다임 전환 /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 전문성 · 신뢰성 기반의 평가품질 유지
접근 전략	STEP 1 2019년: 주요 공공기관 본사 (128개소)+현장 실태조사 (희망기관)
	STEP 2 2020년: 주요 공공기관 본사(128)+지사(442)+현장(1,247) 평가 (1,800여개소)
	STEP 3 2021년: 전체 공공기관 본사(339)+지사(772)+현장 평가(1,290) (2,400여개소)

안전은 권리입니다

CONTENTS

3 평가근거 및 개요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안전은 권리입니다

관련법규, 정책

평가실시 법적 근거

-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7호(2019. 9. 23) 」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평가실시 정부대책 등 근거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국조실, '19.3.19)」
-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기재부, '19.3.28)
- '19년 정부경영평가 편람(기재부, '19.10.7)

(안전배점 상향) 최대 2점 → 최대 6점

(안전지표 신설) 안전전문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산업재해 예방노력도)를 별도 지표로 신설하여 경영평가에 반영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안전은 권리입니다

평가 목적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향상 유도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일터 조성"

평가 주체

- 평가주관 : 고용노동부
- 평가수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합동 평가반 운영 : 학계 등 외부전문가, 노동부, 공단 등

평가 대상(안)

- 총 128개 기관 본사
  - 공기업 Ⅰ : 10개 기관
  - 공기업 Ⅱ : 26개 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3개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36개 기관
  - 강소형 준정부 기관 : 43개 기관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안전은 권리입니다

평가일정(안)

- 평가 : '20년 1월 ~ '20년 2월(2개월) 예정
  - * 평가 M/day : 평가반 5명 x 2일
- 결과제출 : '20년 3월(노동부→기재부)
  - * 노동부 : 공공작업장 안전정책 참고, 기재부 : 정부 경영평가 참고

평가절차(안)

세부 평가 계획 수립·보고	평가계획 수립·공지	설명회 개 최(2회)	수준평가 실 시	실무평가 위원회 개최
공단→ 노동부(기재부)	노동부(공단)→ 대상기관	노동부(공단)→ 대상기관	노동부(공단)→ 대상기관	공단

잠정결과 공지 · 이의신청 안내	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통 보	평가결과 송 부	경영평가 참고자료 활용
공단→ 대상기관	노동부	노동부→ 대상기관	노동부→ 기재부	기재부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안전은 권리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사항 심의
- 평가심의위원장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평가위원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업무 주관부서장
  - 안전보건공단 평가담당부서장
  - 다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조교수 이상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안전은 권리입니다

CONTENTS

4 평가지표 체계 및 주요내용

13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1 안전활동 수준평가

평가지표 구성체계

안전은 권리입니다

평가항목 구성 : 4개 분야 34개 평가항목 (1,000점 만점)

-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활동을 P-D-C-A 관점에서 안전보건체제, 활동계획, 활동수준, 성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지표체계 마련(34개 평가항목)
  - 공통 평가지표 26개, 발주 및 수급업체 관리 특화지표 8개 적용
- 1개 평가항목은 2~4개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 다차원 평가 실시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을 통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화 예정

합 계	안전보건체제 (System)	안전보건활동 계획 (Plan)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34개	4개	2개	26개	2개

14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평가지표 총괄표

분야	분야별 배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안) (1)	(2)	(3)	(4)
Ⓐ안전보건체계 (System) • 4개 항목	250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100	100	100	100
		②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수준	50	50	50	50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50	50	50	50
		④ 안전보건경영 투자 수준	50	50	50	50
Ⓑ안전보건활동 계획 (Plan) • 2개 항목	100	① 안전관리규정 작성	50	50	50	50
		② 안전기본계획 수립	50	50	50	50
Ⓒ안전보건활동 수준 [4개 영역] (Activity Level) • 26개 항목	500	**Ⓒ-1 【공통 안전보건관리】**	**200**	**200**	**200**	**300**
		① 일반 작업안전 관리	15	15	15	25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수준	10	10	10	15
		③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10	10	10	15
		④ 위험성평가	30	30	30	45
		⑤ 안전보건교육	20	20	20	30
		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수준	30	30	30	45
		⑦ 위험작업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제도)	15	15	15	20
		⑧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20	20	20	30
		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0	10	10	15
		⑩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20	20	20	30
		⑪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20	20	20	30
		Ⓒ-2 【발주 안전보건관리】	**100**	**150**		
		①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50억 원 이상 공사)	20	30		
		②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50억 원 이상 공사)	20	30		
		③ 시공자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20	30		
		④ 공사 안전보건감독 계획 및 수행	20	30		
		⑤ 건설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20	30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100**		**150**	
		①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40		60	
		② 수급업체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행 수준	30		45	
		③ 안전보건 교육 등 인프라 지원	30		45	
		Ⓒ-4 【현장 안전보건관리】	**100**	**150**	**150**	**200**
		① 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	20	30	30	40
		②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0	15	15	20
		③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10	15	15	20
		④ 추락·낙하·붕괴 등 시설물 위험방지 조치	20	30	30	40
		⑤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10	15	15	20
		⑥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수준	20	30	30	40
		⑦ 작업환경 관리 수준	10	15	15	20
Ⓓ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 2개 항목	150	① 성과측정 및 시정조치	80	80	80	80
		②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70	70	70	70
합 계	1,000		1,000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별 평가지표 구성(예)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안전보건체계 (System) • 4개 항목	100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식과 실천의지 적정성 1.2. 경영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공표 및 공유 여부 1.3. 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직접 참여 여부
	5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	2.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수준의 적합 여부 2.2. 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적합 여부 2.3. 안전보건조직 역량 유지방안 및 구성원의 전문성 적정 여부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획득 노력 수준 [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50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3.1.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3.2.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 적정성 3.3. 안전목표관리제 시행 여부
	50	④ 안전보건경영 투자 수준	4.1. 안전보건관리 예산 관리기준 수립의 적정성 4.2. 안전보건관리 예산 집행율의 적정성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세부평가내용 및 착안사항(예)

안전은 권리입니다

1 안전보건체제 [System]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체제 (System)	-	10
지표 정의	원·하청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의지 및 실제 주요 활동에 동참하여 활동하는 수준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식과 실천의지 적정성 1.2. 경영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공표 및 공유 여부 1.3. 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직접 참여 여부
평가 착안 사항	1.1. 경영자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경영 의지, 관심도, 현장활동 참여, 향후 향상 계획 등의 적정성 확인 1.2. 문서화된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가 작성되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 여부 1.3. 안전보건경영회의(정부주제·자체), 현장 안전보건점검, 정기 업무보고 실시 등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 • 국조실·기재부·노동부 등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관련 회의·워크숍 등
준비 사항	○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의 작성·게시·공유 증빙자료 ○ 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련 회의(정부주제·자체) 및 현장점검 실시 증빙자료 ○ 경영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정기보고 실시 증빙자료
기타 사항	○ 경영자* 면담 참여(일정/장소 제시) • 기관장, 부기관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중 기관에서 선택 가능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1.1.득점 + 1.2.득점 + 1.3.득점) ※ N = 1.1. ~ 1.3. 의 해당 수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체제(System)	-	10
지표 정의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수준 및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2.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수준의 적합 여부 2.2. 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적합 여부 2.3. 안전보건조직 역량 유지방안 및 구성원의 전문성 적정 여부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획득 노력 수준 [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평가 착안 사항	2.1. 조직도, 업무분장 등을 통한 조직 구성과 권한 부여의 적적합 여부(중점기관은 기관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 및 임원급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여부) 2.1. 전담인력수, 적정 자격자, 채용 및 배치 등을 통한 인력 운영의 적합 여부 2.3. 안전인력의 역량 제고 및 유지, 인센티브 관련 규정 등의 적정 여부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획득 노력 수준 [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준비 사항	○ 안전보건조직 구성에 관련 서류, 조직도 ○ 안전관계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계획, 인사규정 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 KOSHA MS 또는 18001 등) 획득 계획 및 추진서류, 인증서 등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2.1.득점 + 2.2.득점 + 2.3.득점 + 2.4.득점) ※ N = 2.1. ~ 2.4. 의 해당 수

17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내용별 평가방식

안전은 권리입니다

세부 평가내용 특성에 따라 정성· 정량· 적부 평가방식 차별화 적용

- 과정 및 노력도 적정성 평가 : 5등급 평가 정성평가
- 법제도정책 등 반영 수준 평가 : 3단계 정성평가
- 실행준수 여부 평가 : 적부평가
- 결과 값 등 성과 평가 : 정량평가(산식적용)

18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4개 평가분야 중점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1. 안전보건체제

- 최고 경영자 의지(방침· 목표), 안전관리 조직, 안전경영시스템 , 안전보건 투자 등

2. 안전보건활동 계획

- 안전관리 규정, 안전기본계획 수립· 이행 등

3. 안전보건활동 수준(공통· 발주· 수급· 현장)

- (공통) 위험성평가, 안전작업허가,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참여, 등
- (발주) 계획· 시공 등 단계별 안전보건조치(DFS, 적격업체 선정, 공사감독 등)
- (수급) 적격 수급업체 선정, 협의체 구성· 운영, 교육 등 인프라 지원 등
- (현장) 화재· 폭발· 누출· 끼임· 감전· 추락· 질식 등 현장 안전관리 수준

4. 안전보건경영 성과

-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 내· 외부 감사 시정조치, 아차사고 관리, 산재감소 성과 등

1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별 착안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1. 안전보건체제

- 최고 경영자의 실천의지,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활동 적정성(경영진 면담)
-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활동 적합 여부(인력, 권한, 전문성 등)
- 자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준(안전관리 중점기관)
  - · KOSHA-MS(18001), ISO45001, 기타 자체 시스템 구축 등
    - * 해외진출 등 국제인증 필요시 ISO45001 인정
-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안전목표관리제 여부 (안전관리 중점기관)
- 안전보건예산 관리 및 집행율 적정성 등

분야별 착안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2.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구성의 적정성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등)
  - 안전보건조직,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 위험성평가, 사고조사 및 대책 등
  - 산안법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고려여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및 변경관리 여부 등
- 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기재부 지침 제6조 및 작성 서식 등)
  - 전년 실적 및 평가, '19년 추진계획, 재해분석 및 목표, 대상 시설, 예산 등
  - 주무기관 협의 및 이사회 승인 등 절차

분야별 착안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3. 안전보건 활동수준(공통)

- 일반작업안전 지침(기준· 수칙· 가이드 등)의 적정성
  - 작업장 출입전 안전조치, 2인 이상 작업, 신규자 단독작업금지, 기상이변시(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작업중지, 고객폭언, 기타 사내 안전 수칙 등
- 안전관련 법규 요구사항 도출 및 관리 수준
  - 소방, 전기, 가스, 환경, 시특법 등 관련 법규 등록 및 요구사항 검토 등
- 건강진단 실시 계획· 이행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수준
-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선 이행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행점검, 감소대책 이행의 적정성
- 안전보건 교육계획 및 실시의 적정성

1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별 착안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3. 안전보건 활동수준(공통)

- 노동자 참여(안전보건 신고· 제안· 포상 제도 운영) 적정성
- 안전보건경영 방침· 목표 등 노동자 공유· 소통 적정성(노동자 면담)
- 고위험 작업(반복작업, 정비· 보수 등) 작업표준 작성 적정성
-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의 적정성
-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조사 지침 및 이행의 적정성
- 피해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및 훈련의 적정성
- 안전점검의 날, 안전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23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별 착안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3. 안전보건 활동수준(발주)

- 적정 공사기간 및 금액 산정, 설계안전성(DFS) 검토 여부 등
-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의 적정성 등
- 입찰참여 제한 등을 통한 적격 시공자 선정 노력 수준 등
- 공사감독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 도급인의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 요청 반영 수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수준 등

24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별 착안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3. 안전보건 활동수준(수급)

- 적정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 및 이행· 관리의 적정성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의 적정성
- 순회점검, 합동점검 실시의 적정성
-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의 적정성 등

25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별 착안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3. 안전보건 활동수준(현장)

- 작업장 일반 안전관리(통로, 정리정돈, 보호구, 안전표지, MSDS 등)
- 기계기구 위험방지조치(방호조치, 안전검사 , LOTO 등)
- 전기기계기구 위험방지(충전부 방호, 접지, 방폭기기, 비상전원 등)
- 시설물 추락· 낙하· 붕괴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비계, 균열, 침하 등)
-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 예방조치(점화원, 소방설비 등)
- 밀폐공간 등 질식사고 예방조치, 위생 및 응급시설 등
- 기타 화재· 폭발· 누출· 끼임 · 감전 · 질식· 추락· 붕괴· 도괴 등 방지조치의 적정성

26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분야별 착안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4. 안전보건 경영성과

-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이행의 적정성
  - 각 개별법(안전, 소방, 환경, 건설 등)에 따른 외부 지적사항 개선의 적정성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관련 법령별 시정조치 현황표(필수 작성·제출)>

순번	법령(조문)	소관부처	점검기관	지적사항					시정조치 현황			
				일자	내용	건수	벌칙/과태료	금액(천원)	개선여부	개선일자	개선내용	미개선사유
1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9.10.15.	산재은폐	10	벌금	3,200	개선	19.10.20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2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19.10.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 명령위반	1	징역1년	-	개선	-	명령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	-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19.10.15.	고압가스 안전검사 미실시	3	과태료	50	미개선	-	-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상태(20.1월 검사 예정)

※ 상기 현황은 정부경영평가 참조사항으로 허위사실 기재,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 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 조치에 따른 귀책사유는 해당 기관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차사고 발굴 및 개선의 적정성
- 산업재해 감소성과(재해율, 사고사망자)

안전은 권리입니다

CONTENTS

5 협조사항 및 향후계획

1 안전활동 수준평가

평가관련 협조사항

안전은 권리입니다

-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장소의 제공
  - 평가위원 5명, 2일
- 경영진 및 노동자 대표 등 면담
-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시 현장 안내(본사 유틸리티 시설 등)
- 기타 평가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1 안전활동 수준평가

향후 계획

안전은 권리입니다

- 평가계획 공지(10월말, 노동부)
- 사전 현지 실태조사(11월 중)
  - 평가지표 유의성 검증(현장 의견수렴 등, 평가그룹별 1개 이내)
- 평가단 워크숍 및 지표고도화(11월 중)
- 수준평가 2차 설명회 (11월말 예정)
  - 안전활동 수준평가 매뉴얼 제작· 배포(최종 평가지표 확정)
    - 1차 설명회 결과 및 정부(기재부 등) 요구사항 반영 등 (결과제출 방식 등)
  - 기관별 평가일정 공지 등

안전은 권리입니다
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시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방향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배경

□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 필요**

○ **안전**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인명 피해 반복***으로 **국민**의 **불안감 확대, 공공기관 신뢰 저하**

*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18.12.4), KTX 강릉선 탈선('18.12.8), 서부발전 청년노동자 사망사고('18.12.11) 등

○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안전**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자체 안전관리 강화 동력확보**가 **절실**

□ **근원적인 공공기관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필요**

○ 그간 **경영평가제도**는 방만경영 정상화('14), 임금피크제 도입('15), 사회적 가치 구현('18)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근원적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 제도 개선*** 추진

* ①안전 및 환경 배점 종합등급 조정근거 마련, ②재난안전 중점기관 신재예방 노력도 신설(2~6점), 중대사고 발생시 성과급 대폭 삭감, ③평가단 구성시 안전 전문가 확대, ④전문기관의 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 공공기관 평가 반영

○ 이러한 **안전** 관련 지표 **가중치 확대** 등 **평가제도 개선**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유도**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 기대**

⇒ **공공기관이 안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안전관리 평가제도 마련 필요**

2 추진경과

◇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19.3월, 정부부처 합동 및 기재부)에 및 **노동부의 고시**(제2019-47호, '19.9.23)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도입·추진

□ 공공기관의 산재 반복에 따라 경영에서 안전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안전경영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정부 대책 발표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정부부처 합동, '19.3.19.) 및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기획재정부. '19.3.28)

○ 공공기관장 워크숍(기재부, 4월·9월) 및 공공기관 안전경영자 회의(노동부, 7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등 사회적 책임 강조**

□ 안전 우선 원칙 현장정착을 위해 정부경영평가 반영 필요성 대두

○ 정부경영평가 시 **평가단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확대*** 및 **안전전문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추진

* 안전 전문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을 추진하고 **경영평가단 구성 시 안전 분야 전문가 확대** (관계부처 합동, '19.3.19)

** 경영평가시 **안전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 위험성평가·점검 결과 등 반영** (기획재정부, '19.3.28)

□ 자율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 관한 노동부 고시』* 제정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53호, '19.9.16)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Ⅱ. 평가목적 및 개요

□ 평가목적

◇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선택적·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명권, 각종 기본권에 앞서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 권리**

◇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는 공공 일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통해 민간부문까지 **안전**이 **제1의 가치**가 되도록 **선도적 역할 제고**

□ 평가개요

○ (개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작동성,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활동 수준 평가

○ (평가체계) P-D-C-A 관점에서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안전경영 리더십·실행수준·환류성과** 등 평가

□ **평가수행** : 노동부(주관) - 안전보건공단(수행)의 평가 체계

□ **평가대상**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공단 128개 공공기관의 본사**

구 분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Ⅰ형	Ⅱ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평가대상	128개소	10개소	26개소	13개소	36개소	43개소

※ 안전보건공단은 평가 수행 기관임을 감안하여 결측값 처리

□ 평가방법

○ (평가시기) '19년도 정부 경영평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년 1월 ~ '20년 2월** 추진

○ **(평가방법)** 평가대상에 대하여 **현장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등급 결정

○ **(현장평가)**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학계, 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수행**

○ **(등급결정)** 기재부, 노동부, 민간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별 등급 결정**

□ 평가결과 조치

○ **(결과제출) 정부 경영평가단 사전 검토** 등을 고려하여 **'20년 3월말 결과 제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개 유형별 평가 보고서 작성・제출**(기재부 요구사항 반영 예정)

○ **(환류)** 평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정부 경영평가단**에 **제공**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

-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상 「경영관리 범주」 - 「사회적 가치 구현」 - 「안전과 환경」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송부**

□ 기타사항 [지표 유의성 실태조사(예정)]

○ **(목적)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표 유의성 검증**으로 수준평가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 **(대상) 평가그룹 유형별 1개소 이내**

○ **(환류) 의견수렴 결과 반영하여 지표 고도화**

Ⅲ. 세부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평가계획 공지 후 평가실시**

- ❖ 연1회 1분기 중 본사 중심 평가
- ❖ 평가반은 노동부 · 공단 · 외부(학계) 전문가로 구성 · 운영
- ❖ 평가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노동부에서 최종심사 및 결과통보 실시(기재부 활용)

1 평가절차

□ 평가 프로세스

세부 평가 계획 수립·보고	평가계획 수립·공지	설명회 개 최(2회)	수준평가 실 시	실무평가 위원회 개최
공단→ 노동부(기재부)	노동부(공단)→ 대상기관	노동부(공단)→ 대상기관	노동부(공단)→ 대상기관	공단

잠정결과 공지 · 이의신청 안내	평가심의 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통 보	평가결과 송 부	경영평가 참고자료 활용
공단→ 대상기관	노동부	노동부→ 대상기관	노동부→ 기재부	기재부

□ 평가 일정

구분	월	9				10					11				12				1					2				3
	주차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1 평가계획 공지(노동부)																												
2 1차 설명회(의견수렴)																												
2 2차 설명회(최종)																												
3 지표 유의성 실태조사																												
4 공공기관 현장평가																												
5 실무평가 위원회																												
6 결과공지 및 이의신청																												
7 평가심의 위원회																												
8 결과통보 및 제출																												

2 평가전략

□ [방침] 『안전한 공공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대책의 선도적 견인

○ 안전중심의 공공기관 경영 패러다임 조기 전환 유도

○ 민간을 선도하는 공생협력(원 · 하청) 안전 인프라 구축

○ 전문성 · 신뢰성 기반의 평가품질 유지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평가 착안사항

☑ 노동부와 공단이 평가위임 전담 수행 ('20년 3월 말 결과제공)

☑ 충분한 사전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피평가 기관의 수용도 제고(저항 최소화)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토록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전략] 단계별 적용을 통한 안전 평가제도 연착륙 유도

○ 최초시행에 따른 혼선 및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해 단계적 접근전략 적용

- '19년은 본사 및 주요현장 우선 적용 후 '20년 이후 단계적 확대시행

<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전략체계(안) >

비 전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일터 조성
목 표	'22년 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60%) 감소
방 침	안전 중심 경영 패러다임 전환 /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 전문성 · 신뢰성 기반의 평가품질 유지
접근 전략	STEP 1 2019년: 주요 공공기관 본사(128개소)+실태조사(희망기관)
	STEP 2 2020년: 주요 공공기관 본사(128)+지사(442)+현장(1,247) 평가 (1,800여개소)
	STEP 3 2021년: 전체 공공기관 본사(339)+지사(772)+현장 평가(1,290) (2,400여개소)

3 평가방법

1 평가지표 마련

○ **전문성·신뢰성** 기반의 공공기관 안전수준 성과평가지표 작성[공단]

- 평가항목 구성 : **4개 분야 34개** 평가항목

합 계	안전보건체제 (System)	안전보건활동 계획 (Plan)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34개	4개	2개	26개	2개

○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의 **실효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동부·공단·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지표 신뢰성 검증** [노동부, 공단]

- 평가지표 및 내용의 수용성 제고, 편차 최소화를 위한 적정성 검토

2 평가계획 수립·공지

○ **(계획수립·보고)**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 평가계획 수립** [공단→노동부(기재부)]

○ **(계획 공지)** 최종 확정된 안전활동 **수준평가 일정 등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기관에 공지** [노동부(공단)→평가 대상기관]

3 설명회 개최

○ 평가계획 공지 후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평가 착수 전 안전활동 수준평가 설명회(2회)** 개최 [노동부, 공단]

- 1차 : 평가지표 착안사항, 수준평가 수검 시 필요서류 안내, 평가 세부계획 등 설명회를 실시하되, 의견수렴 위주로 진행

- 2차 : 1차 설명회 의견수렴 및 정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 계획, 지표 등을 보정하여 최종 설명회 실시

4 평가반 구성 및 현지평가 [노동부(공단)→평가 대상기관]

○ **(평가반 구성) 학계·노동부·공단 합동 평가반** 구성하여 운영

- 평가대상 공공기관 **1개소에 5명, 2일** 평가 실시

5 실무평가 위원회 [노동부(공단)]

○ 평가 프로세스별 **단계적으로 실무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 확보

수준활동 평가	➡	중간점검 심의	➡	수준활동 평가	➡	잠정등급 결정심의	➡	결과공지 및 이의신청	➡	이의검토 및 보정심의

6 결과공지 및 이의신청

○ 실무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잠정 평가결과를 각 평가 대상기관에 공지**하고, [노동부(공단)→평가 대상기관]

-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여 평가 대상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수용도 확보 [평가 대상기관→노동부(공단)]

7 평가심의 위원회

○ 각 평가 대상기관별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평가등급 결정** [노동부, 공단]

8 결과통보 및 제출

○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 대상기관 4개 유형별 **종합등급**과 각 기관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재부 송부**(기재부 요구 사항 반영 예정) [노동부→기재부]

9 참고자료 활용 등

○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상 「경영관리 범주」 - 「사회적 가치 구현」 - 「안전과 환경」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기재부]

○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향상 유도 및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수립 참고 자료 등 활용** [노동부(공단)]

Ⅳ. 평가체계 및 지표구성

◇ **안전보건체제 · 활동계획 · 활동수준 · 활동 성과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유형별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지표체계 마련**

- 총 34개 평가지표로 나누어 **공공기관 공통 평가지표(26개), 발주 및 수급업체 관리 특화 평가지표(8)**를 **적용**

1 평가체계

□ 지표 목표

ㅇ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보건활동을 P-D-C-A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조성**

□ 지표 체계

ㅇ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①**평가분야**(영역)-②**평가항목**-③**세부평가항목**-④**평가점수**」로 지표구성

① 평가분야

ㅇ 안전활동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체제**, Ⓑ**안전보건활동 계획**, Ⓒ**안전보건활동 수준**,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평가분야**으로 구분

ㅇ 소방 · 환경 · 건축 등 각 **개별법상의 주요항목**(화재 · 폭발 · 누출 · 붕괴 등)을 Ⓒ**안전보건활동 수준 지표에** 포함하여 대국민 안전확보에 기여

② 평가항목

ㅇ **4개 평가분야**(7개 영역)의 **총 34개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현장평가 시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만 적용하여 평가 실시

③ 지표내용별 평가

ㅇ 평가내용 특성에 따라 **정성·정량·적부** 평가방식 적용

- **과정 및 노력도** 적정성 평가지표 : 5등급 정성평가

- **법·제도·정책** 등 반영 수준 평가지표 : 3단계 정성평가

- **실행·준수** 여부 평가지표 : 적부평가

- **결과 값** 등 성과 평가지표 : 산식에 의한 정량평가

④ 평가 항목별 점수

ㅇ **4개 평가 분야(7개 영역)별로 계층화**한 후 전문가 집단이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는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을 이용**

- **4개 분야별, 34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화**

  *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 평가기준이 다수이고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chy)화 하여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상대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 방법

⑤ 평가점수 보정

ㅇ **평가자 그룹 간 점수 보정**

- 평가자 그룹의 구성원 특성(가혹한 평가자, 관대한 평가자)에 따른 평가의 유·불리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자 그룹 간 점수를 표준화*하여 보정

  * 표준화(Standardization) : 평가 그룹간 상이한 점수 분포를 평균(μ)을 "0"으로 표준편차(σ,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1"인 동일한 분포로 점수 변환

  · 산식 : 표준화 점수(Z) = 평가점수 - 평균(μ) / 표준 편차(σ)

- 표준화 효과 : 평가자 그룹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치시킴으로써 동일한 분포 내에서 비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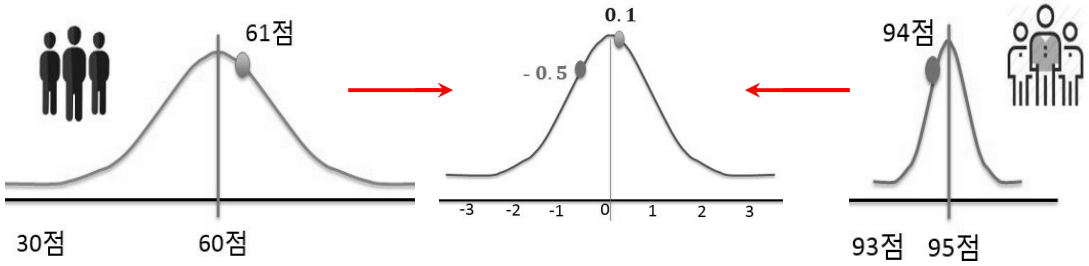

ㅇ 최종 기관 점수의 보정(예)

- **기관별 획득 점수(1,000점 만점)를 "평균/표준편차 일치법*" 을 이용하여** 전체 평가 기관(128개소)의 평균(μ) 점수를 700점으로 표준 편차(σ)를 10점으로 조정

- 최고 점수 획득 기관과 최하 점수 획득 기간의 점수 차는 최대 60점**이 되도록 보정

* 평균/편차 일치법 : 평가 대상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준화하여 일치시킨 후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자 그룹이 여럿인 경우,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과 같이 응시자의 선택 과목이 다른 경우의 우선 순위 선정 등에 사용

· 산식 : 전체 평균점수(700점) + $\frac{\text{평가점수} - \text{평가 그룹의 평균}(\mu)}{\text{평가 그룹별 표준 편차}(\sigma)}$ × 표준편차(10점)

** 평가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평가 점수의 99.7%는 「평균 -(3×표준편차(σ))~평균 + (3×표준편차(σ))」 범위 안에 분포

· 따라서 표준편차를 10점으로 할 경우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30점에서 30점 사이에 대부분 기관이 존재

- 최종 평가 항목별 가중치(배점) 및 보정방법은 지표 유의성 실태조사(11월) 등 검증과정을 거쳐 평가전까지 (12월) 확정 예정

2 평가결과 산출

□ 산출기준

ㅇ 평가 이후 결과 값을 평가 주관기관 등 제출(기재부 요구사항 반영 예정)

① 평가결과 총 득점(1,000점 만점)

② 절대평가 등급(5등급) 등

□ 절대평가 등급 기준(예시)

ㅇ 각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합산 점수를 평가영역별 등급표에 따라 평가 등급(star)을 결정하고, 평가영역별 합산 점수를 안전활동 수준 평가 등급표에 따라 최종 평가 등급(star) 결정

<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급표(예) >

1,000점 ~ 800점 이상	800점 미만 ~ 600점 이상	600점 미만 ~ 400점 이상	400점 미만 ~ 200점 이상	200점 미만
5 Star (★★★★★)	4 Star (★★★★)	3 Star (★★★)	2 Star (★★)	1 Star (★)
Ⓢ Excellent	Ⓐ Good	Ⓑ Satisfactory	Ⓒ Moderate	Ⓓ Basic

3 평가지표 총괄표 (4개 분야 34개 평가항목)

분야	분야별 배 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안)			
			(1)	(2)	(3)	(4)
Ⓐ안전보건체제 (System) • 4개 항목	250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100	100	100	10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	50	50	50	50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50	50	50	50
		④ 안전보건경영 투자 수준	50	50	50	50
Ⓑ안전보건활동 계획 (Plan) • 2개 항목	100	① 안전관리규정 작성	50	50	50	50
		② 안전기본계획 수립	50	50	50	50
Ⓒ안전보건활동 수준 [4개영역] (Activity Level) • 26개 항목	500	**Ⓒ-1 【공통 안전보건관리】**	**200**	**200**	**200**	**300**
		① 일반 작업안전 관리	15	15	15	25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수준	10	10	10	15
		③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10	10	10	15
		④ 위험성평가	30	30	30	45
		⑤ 안전보건교육	20	20	20	30
		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수준	30	30	30	45
		⑦ 위험작업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제도)	15	15	15	20
		⑧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20	20	20	30
		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0	10	10	15
		⑩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20	20	20	30
		⑪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20	20	20	30
		Ⓒ-2 【발주 안전보건관리】	**100**	**150**		
		①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50억 원 이상 공사)	20	30		
		②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50억 원 이상 공사)	20	30		
		③ 시공자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20	30		
		④ 공사 안전보건감독 계획 및 수행	20	30		
		⑤ 건설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20	30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100**		**150**	
		①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40		60	
		② 수급업체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행 수준	30		45	
		③ 안전보건 교육 등 인프라 지원	30		45	
		Ⓒ-4 【현장 안전보건관리】	**100**	**150**	**150**	**200**
		① 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	20	30	30	40
		②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0	15	15	20
		③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10	15	15	20
		④ 추락·낙하·붕괴 등 시설물 위험방지 조치	20	30	30	40
		⑤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10	15	15	20
		⑥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수준	20	30	30	40
		⑦ 작업환경 관리 수준	10	15	15	20
Ⓓ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 2개 항목	150	① 성과측정 및 시정조치	80	80	80	80
		②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70	70	70	70
합 계	1,000		1,000			

* 항목별 배점(안)은 AHP 기법 등을 적용하여 추가 고도화 예정임

2 분야별 평가지표 구성

Ⓐ 안전보건체제

○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등 활동수준, 안전보건 경영 조직 수준, 투자 수준, 경영체제 구축현황 등 평가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안전보건체제 (System) • 4개 항목	100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식과 실천의지 적정성 1.2. 경영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공표 및 공유 여부 1.3. 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직접 참여 여부
	50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	2.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수준의 적합 여부 2.2. 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적합 여부 2.3. 안전보건조직 역량 유지방안 및 구성원의 전문성 적정 여부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획득 노력 수준 [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50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 경영 조직 활동 수준	3.1.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3.2.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 적정성 3.3. 안전목표관리제 시행 여부
	50	④ 안전보건경영 투자 수준	4.1. 안전보건관리 예산 관리기준 수립의 적정성 4.2. 안전보건관리 예산 집행율의 적정성

Ⓑ 안전보건활동 계획

○ 안전관리규정 작성 적정성, 안전기본계획 수립 적정성 등 평가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안전보건활동 계획 (Plan) ・2개 항목	50	① 안전관리규정 작성	1.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세부 구성내용의 적정성 1.2. 안전관리규정에 관련 법 사항, 단체협약 등 반영 및 공유 여부 1.3. 안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및 최신화 관리 수준
	50	② 안전기본계획 수립	2.1. 안전기본계획 항목 구성의 적합 여부 2.2. 안전기본계획 수립·이행 절차 및 기한 준수 여부 2.3. 안전기본계획 작성의 적정성

Ⓒ 안전보건활동 수준

공통 안전보건 관리

○ (공통적용) 일반안전기준, 점검기준, 위험성평가, 교육 등 안전보건 활동 수준 평가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안전보건활동 수준 [4개영역] (Activity Level) ・26개 항목	【Ⓒ-1. 공통 안전보건 관리】		
	15 (25)	① 일반 작업안전 관리	1.1. 일반작업안전 지침의 적정성 1.2. 안전관련 법규 적용사항 도출 및 현황 관리 수준
	10 (15)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수준	2.1. 건강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안내의 적정 수준 2.2. 건강진단결과 건강관리구분에 따른 이상소견자 (C, D) 파악 수준 2.3. 건강 유소견자(D)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수준 2.4. 노동자 건강증진활동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10 (15)	③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3.1. 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및 계획의 적정성 3.2. 시설물 점검결과 개선대책의 수립 및 이행상태의 적정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30 (45)	④ 위험성평가	4.1.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및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관련 지침의 적정성 4.2.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의 적정성 4.3. 감소대책 이행 및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의 적정성
	20 (30)	⑤ 안전보건교육	5.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5.2.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 적정성 5.3.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적정성
	30 (45)	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수준	6.1.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 제도 운영계획의 적정성 6.2.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 내용의 반영(Feed-Back) 수준 63. 노동자 안전보건경영 인식제고 노력의 적정성
	15 (20)	⑦ 위험작업 안전관리 (안전작업허가제도)	7.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의 적정성 7.2.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여부 및 허가서 발행·승인 절차의 적정성 7.3.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의 적정성
	20 (30)	⑧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8.1. 재해 등의 원인조사 지침 작성 여부 및 적정성 8.2. 재해 등의 원인조사 지침 이행 적정성
	10 (15)	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9.1.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 작성의 적정성 9.2.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변경관리 적정성 9.3. 사고 사나리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9.4.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설비, 감지기, 구호 장구 등 비상대응 시설·장비의 적정성
	20 (30)	⑩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10.1. 대국민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지침 등) 작성의 적정성 10.2. 대국민 이용시설의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에 대비한 사고 시나리오의 적정성 10.3. 비상대피로·대피장소 등 비상대응 시설·장비 관리 관리 및 비상유도 훈련의 적정성 10.4. 대국민 이용시설 사용국민을 위한 재난 및 사고예방 안전메시지 전달의 적정성
	20 (30)	⑪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11.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11.2.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의 적정성 11.3.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전개·지원의 적정성

발주 안전보건 관리

○ **(발주공사 보유 기관 적용)** 발주 계획, 시공사 선정, 공사감독 등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안전보건활동 수준 [4개영역] (Activity Level) ・26개 항목	【©-2. 발주 안전보건 관리】		
	20 (30)	①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 (50억 원 이상 공사)	1.1. 발주공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금액 산정 여부 1.2. 설계 안전성 검토(DFS) 활동의 적합 여부
	20 (30)	②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50억원 이상 공사)	2.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의 적합 수준 2.2. 설계자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2.3. 도급인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2.4.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활동의 적정성
	20 (30)	③ 시공자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3.1. 입찰 참여 제한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노력 수준 3.2. 적격 시공자 선정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노력 수준
	20 (30)	④ 공사 안전보건감독 계획 및 수행	4.1. 공사 안전보건관리 수준 유지를 위한 공사감독 계획 수준 4.2. 공사감독자 교육 및 역량 적합 수준 4.3. 공사감독계획 이행의 적정성
	20 (30)	⑤ 건설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5.1.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시 처리기준에 따른 이행 수준 5.2. 건설공사 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시 처리기준에 따른 이행 수준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관리 수준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 **(협력업체 보유 기관 적용)** 일반안전기준, 점검기준, 위험성평가, 교육 등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안전보건활동 수준 [4개영역] (Activity Level) • 26개 항목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40 (65)	①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1.1. 도급계획 수립·검토 및 입찰공고 절차의 적정성 1.2. 적격 수급업체선정을 위한 참여업체 안전수준 평가의 적정성 1.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후속조치 실행 계획의 적정성
	30 (45)	② 수급업체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 조치 실행 수준	2.1.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정성 2.2. 작업장 순회점검의 적정성 2.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적정성 2.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의 적정성
	30 (45)	③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3.1. 수급업체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지원의 적정성 3.2.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응훈련의 적정성 3.3. 적정 위생시설 확보 여부

현장 안전보건 관리

○ **(현장 적용)** 일반안전기준, 점검기준, 위험성평가, 교육 등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안전보건활동 수준 [4개영역] (Activity Level) • 26개 항목	【©-4. 현장 안전보건 관리】		
	20 (30/ 40)	① 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	1.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적정성 1.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적정성 1.3. 청사관리, 청소, 정비·보수 등의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10 (15/ 20)	②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2.1.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적정성 2.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실시 및 시기의 적정성 2.3.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 적정성
	10 (15/ 20)	③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3.1.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의 적정성 3.2. 방폭전기기계 · 기구 선정 및 적정 사용, 유지·보수의 적정성 3.3. 비상발전기 또는 UPS 등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및 관리의 적정성
	20 (30/ 40)	④ 추락 · 낙하 · 붕괴 등 시설물 위험 방지 조치	4.1. 시설물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조치 적정성 4.2. 시설물의 붕괴 등 위험 방지조치 적정성
	10 (15/ 20)	⑤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5.1.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적정성 5.2. 인화성액체·가스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 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 5.3. 소화설비 적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20 (30/ 40)	⑥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수준	6.1.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 수준 6.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 적정성
	10 (15/ 20)	⑦ 작업환경 관리 수준	7.1. 위생시설 설치 수준 7.2. 건강위험 긴급상황 응급조치 적정성 7.3. 작업환경측정 실시 수준 7.4. 특수건강진단 실시 수준

Ⓓ 안전보건경영 성과

○ 성과측정, 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재해발생 및 감소 수준 등 평가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 2개 항목	80	① 성과측정 및 시정조치	1.1.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의 적정성 1.2. 시정조치 및 개선이행의 적정성
	70	②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2.1.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설정의 적정성 2.2. 아차사고(Near-miss) 발굴 및 개선 노력의 적정성 2.3. 산업재해 발생수준 및 사망자수 감소 성과

Ⅴ.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해설

1 안전보건체제 [System]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체제 (System)	-	100
지표 정의	원·하청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추진의지 및 실제 주요 활동에 동참하여 활동하는 수준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식과 실천의지 적정성 1.2. 경영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의 공표 및 공유 여부 1.3. 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직접 참여 여부
평가 착안 사항	1.1. 경영자 면담을 통해 안전보건경영 의지, 관심도, 현장활동 참여, 향후 향상 계획 등의 적정성 확인 1.2. 문서화된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가 작성되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 여부 1.3. 안전보건경영회의(정부주제*·자체), 현장 안전보건점검, 정기 업무보고 실시 등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 * 국조실·기재부·노동부 등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관련 회의·워크숍 등
준비 사항	○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의 작성·게시·공유 증빙자료 ○ 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련 회의(정부주제·자체) 및 현장점검 실시 증빙자료 ○ 경영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정기보고 실시 증빙자료
기타 사항	○ 경영자* 면담 참여(일정/장소 제시) * 기관장, 부기관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중 기관에서 선택 가능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0/N × (1.1.득점 + 1.2.득점 + 1.3.득점) ※ N = 1.1. ~ 1.3. 의 해당 수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체제(System)	-	50
지표 정의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수준 및 안전관리조직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2.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수준의 적합 여부 2.2. 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적합 여부 2.3. 안전보건조직 역량 유지방안 및 구성원의 전문성 적정 여부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획득 노력 수준 [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평가 착안 사항	2.1. 조직도, 업무분장 등을 통한 조직 구성과 권한 부여의 적적합 여부(중점기관은 기관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 및 임원급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여부) 2.1. 전담인력수, 적정 자격자, 채용 및 배치 등을 통한 인력 운영의 적합 여부 2.3. 안전인력의 역량 제고 및 유지, 인센티브 관련 규정 등의 적정 여부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획득 노력 수준 [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준비 사항	○ 안전보건조직 구성에 관련 서류, 조직도 ○ 안전관계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원계획, 인사규정 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 KOSHA MS 또는 18001 등) 획득 계획 및 추진서류, 인증서 등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50/N × (2.1.득점 + 2.2.득점 + 2.3.득점 + 2.4.득점) ※ N = 2.1. ~ 2.4. 의 해당 수

3.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체제 (System)	-	50
지표 정의	원·하청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 적정성 및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설정의 적정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3.1. 안전경영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3.2.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의 적정성 3.3. 안전목표관리제 시행 여부
평가 착안 사항	3.1. 본사의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및 사업장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내용 포함 등 적정성 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대상 사업장의 안전근로협의체를 개최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내용 포함 등 적정성 3.3. 매년 사업장 산재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의 적정 설정 여부
준비 사항	○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지침 및 회의록,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지침 및 회의록 ○ 안전기본 계획서 상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 기타 추진 계획 및 실행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회의록 확인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50/N × (3.1.득점 + 3.2.득점 + 3.3.득점) ※ N = 3.1. ~ 3.3. 의 해당 수

4. 안전보건경영 투자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체제 (System)	-	50
지표 정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4.1. 안전보건관리 예산 관리기준 수립의 적정성 4.2. 안전보건관리 예산 집행율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4.1. 시설개선, 교육·훈련, 신제품·기술 개발·구매, 건강증진 등 안전보건관리예산 사용 기준, 사용절차, 집행실적 관리기준 등 기준수립의 적정성 4.2. 평가대상 년도의 안전보건관리예산 집행율
준비 사항	○ 안전보건관리예산 관리기준, 예산편성 및 집행 자료(안전기본계획・예산집행지침・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 기타 추진 계획 및 실행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50/N × (4.1.득점 + 4.2.득점) ※ N = 4.1. ~ 4.2. 의 해당 수

2 안전보건활동 계획 [Plan]

1. 안전관리규정 작성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계획(Plan)	-	50
지표 정의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내용구성의 충실성, 유지관리 수준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세부 구성내용의 적정성 1.2. 안전관리규정에 관련 법 사항, 단체협약 등 반영 및 공유 여부 1.3. 안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및 최신화 관리 수준
평가 착안 사항	1.1.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제13조 및 산안법 제20조 1항의 안전보건규정 및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등 적정성 1.2. 안전관리규정 작성 시 산안법·소방·전기·교통분야 등 관련법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 단체 요구사항 등 반영 및 공유 여부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노동자대표 동의 절차 준수, 현행 법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화하고, 개정절차에 의한 개정이력 관리 수준
준비 사항	○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서류 ○ 안전관리규정 개정에 필요한 관련서류 검토결과 서류 ○ 안전관리규정의 공유관련 증빙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50/N × (1.1.득점 + 1.2.득점 + 1.3.득점) ※ N = 1.1. ~ 1.3. 의 해당 수

2. 안전기본계획 수립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계획(Plan)	-	50
지표 정의	안전기본계획에 포함한 활동계획과 조직·예산 등의 충실성 및 수립기한 준수여부를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2.1. 안전기본계획 항목 구성의 적합 여부 2.2. 안전기본계획 수립·이행 절차 및 기한 준수 여부 2.3. 안전기본계획 작성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2.1. 안전기본계획 항목 구성의 적정 수립 여부(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기재부 작성 서식 참조) 2.2. 안전기본계획 수립·이행 절차 및 제출기한의 준수, 이행상황 점검 실시 여부 2.3. 안전기본계획 작성 항목별 관련사항에 대한 사전 분석 실시 및 활용여부 등
준비 사항	○ 안전기본계획 및 수립, 제출에 관련된 서류 ○ 안전기본계획에 참조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산재현황 등의 자료 ○ 안전기본계획 이행점검(자체 모니터링 등) 실적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50/N × (2.1.득점 + 2.2.득점 + 2.3.득점) ※ N = 2.1. ~ 2.3.의 해당 수

3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공통 안전보건관리]

1. 일반 작업안전 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15
지표 정의	공공작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일반작업안전 지침과 안전관련 개별법 요구사항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 일반작업안전 지침의 적정성 1.2. 안전관련 법규 적용사항 도출 및 현황 관리 수준
평가 착안 사항	1.1. 일반작업안전 지침(기준, 수칙, 가이드 등) 에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서 명시된 필수 안전수칙 및 고객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 등 포함여부 1.2. 소방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등 안전관련 법령 중 해당 법령확보 및 적용사항 도출 수준
준비 사항	○ 일반작업안전과 관련된 안전 지침, 기준, 수칙, 가이드 등 ○ 안전관련 개별법령 법규등록부 또는 법규 요구사항 검토서 등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5/N × (1.1.득점 + 1.2.득점) ※ N = 1.1. ~ 1.2. 의 해당 수

2.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10
지표 정의	노동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권 확보 활동 수준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2.1. 건강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안내의 적정 수준 2.2. 건강진단결과 건강관리구분에 따른 이상소견자(C, D) 파악 수준 2.3. 건강 유소견자(D)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수준 2.4. 노동자 건강증진활동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2.1. 건강진단 대상자, 대상별 건강진단 종류의 선정, 건강진단 시기, 건강 이상소견자 별도 명단 등을 포함한 건강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안내 등 수준 2.2.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구분에 따른 이상소견자(C, D)를 부서별 별도 기록·관리 수준 2.3.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D)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율 제고 수준 2.4. 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목표 설정, 사업장 내 건강증진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직무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활동 추진내용 등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준비 사항	○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최근 2년간(전년도 및 전전년도) 건강진단 결과표(일반, 특수), 사후관리 대상자 기록 및 사후관리 내역 서류, 건강증진활동 실시계획서, 실행 내역 등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2.1.득점 + 2.2.득점 + 2.3.득점 + 2.4.득점) ※ N = 2.1. ~ 2.4. 의 해당 수

3.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10
지표 정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대책 수립·이행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3.1. 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및 계획의 적정성 3.2. 시설물 점검결과 개선대책의 수립 및 이행상태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3.1. 사업장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지침 및 계획의 적정 수립의 적정성 3.2. 주요 시설물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위험도·시급성을 고려한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의 적정성 여부
준비 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또는 지침 ○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개선계획 및 이행관련 증빙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3.1.득점 + 3.2.득점) ※ N = 3.1. ~ 3.2. 의 해당 수

4. 위험성평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30
지표 정의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및 그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의 적정성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4.1.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및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관련 지침의 적정성 4.2.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의 적정성 4.3. 감소대책 이행 및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4.1.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지침 등),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근거(계약, 지침 등) 사전 확보 등 적정성 4.2.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고용노동부)에 의거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의 적정성 4.3.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도출된 개선대책에 대하여 완료 단계까지 추적관리·이행 및 해당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적정성
준비 사항	○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지침(규정 등), 수급업체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지침(계약 규정 등) ○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수급업체 이행점검 실시 및 보완요구 관련 증빙서류 ○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실시 증빙서류 등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30/N × (4.1.득점 + 4.2.득점 + 4.3.득점) ※ N = 4.1. ~ 4.3. 의 해당 수

5. 안전보건교육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 파악 및 교육계획 수립, 시행 수준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5.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 5.2.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의 적정성 5.3.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5.1. 산안법 및 안전·환경 관련법 상의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정성(산안법 비적용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교육계획 인정) 5.2. 산안법,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기타 안전·환경 관련법에 의한 교육 실시의 적정성 5.3. 교육 참석률 제고, 강사 선정기준 수립, 미참석자 및 평가에 의한 재교육 대상자 재교육 실시 등 교육 실시의 적정성
준비 사항	○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각종 안전법령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파악, 교육실시 증빙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5.1.득점 + 5.2.득점 + 5.3.득점) ※ N = 5.1. ~ 5.3. 의 해당 수

6.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30
지표 정의	노동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 및 반영(Feed-Back) 수준과, 노동자의 안전보건경영 인식 수준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6.1.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 운영계획의 적정성 6.2. 노동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 내용의 반영(Feed-Back) 수준 63. 노동자 안전보건경영 인식제고 노력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6.1. 노동자가 자발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제안·포상제도의 지침 및 계획수립의 적정성 6.2. 신고·제안·포상제도의 실적관리, 채택제안 등의 현장 반영(Feed-Back) 등 실행수준 6.3. 노동자 현장 면담결과 안전보건 인식수준(경영방침 공유·소통, 안전보건조치 이해도 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준비 사항	○ 신고·제안·포상제도 관련 매뉴얼, 규정, 지침 등 계획서 ○ 신고·제안·포상제도 접수목록 및 이행실적 등
기타 사항	※ 주요공정(위험·취약 등) 노동자 또는 노동자 대표 현장면담 실시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30/N × (6.1.득점 + 6.2.득점 + 6.3.득점) ※ N = 6.1. ~ 6.3. 의 해당 수

7. 위험작업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제도)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15
지표 정의	위험작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등 작업안전관리 제도의 적정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7.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의 적정성 7.2.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여부 및 허가서 발행·승인 절차의 적정성 7.3.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7.1. 주요 고위험 작업(정비·보수 작업, 반복작업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작업표준 작성 여부 및 적정성 7.2.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와 승인권자의 안전조치 승인여부, 현장 입회 및 확인 여부 등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의 적정성 확인 7.3. 작업중지 요청제 매뉴얼·절차·지침의 제정 또는 수립 여부 및 운영의 적정성
준비 사항	○ 고위험 작업(정비·보수 작업, 반복작업 등) 작업표준 또는 절차서 ○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매뉴얼·절차·지침 ○ 작업중지 요청제 관련 매뉴얼·절차·지침
기타 사항	※ 실제 발행된 안전작업허가서 사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5/N × (7.1.득점 + 7.2.득점 + 7.3.득점) ※ N =7.1. ~ 7.3. 의 해당 수

8.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수준, 아차사고(Near Miss) 관리수준의 적정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8.1. 재해 등의 원인조사 지침 작성 여부 및 적정성 8.2. 재해 등의 원인조사 지침 이행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8.1. 재해 등의 원인조사 지침(매뉴얼, 절차서 등) 보유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8.2.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 조사보고서 등 작성 여부 및 시기·방법, 조사팀 구성, 원인 및 개선 대책의 적정성
준비 사항	○ 재해 등의 원인조사 지침(매뉴얼, 절차서 등) ○ 재해 등의 원인조사 보고서 ○ 재발방지 개선대책
기타 사항	※ 재발방지 개선대책을 통해 실제 개선된 현장사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8.1.득점 + 8.2.득점) ※ N = 8.1. ~ 8.2. 의 해당 수

9.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10
지표 정의	비상시 피해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수준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9.1.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 작성의 적정성 9.2.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변경관리 적정성 9.3. 사고 사나리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9.4.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설비, 감지기, 구호장구 등 비상대응 시설·장비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9.1. 비상시 피해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비 및 대응 지침 작성의 적정성 9.2.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의 구체적인 사고 시나리오 발굴 및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관리 여부 및 적정성 9.3. 사고 사나리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적정성 9.4.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설비, 감지기, 구호장구 등 비상대응 시설·장비의 체계적 유지관리의 적정성
준비 사항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지침(매뉴얼, 절차서 등) ○ 주요 사고 시나리오 ○ 비상대응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 비상대응 시설·장비 목록
기타 사항	※ 현장 확인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등 확인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8.1.득점 + 8.2.득점 + 8.3.득점 + 8.4.득점) ※ N = 9.1. ~ 9.4. 의 해당 수

10.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대국민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재난 및 위기관리 체계 수준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0.1. 대국민 이용시설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지침 등) 작성의 적정성 10.2. 대국민 이용시설의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에 대비한 사고 시나리오의 적정성 10.3. 비상대피로·대피장소 등 비상대응 시설·장비 관리 관리 및 비상유도 훈련의 적정성 10.4. 대국민 이용시설 사용국민을 위한 재난 및 사고예방 안전메시지 전달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10.1. 교육장·관람장·경기장 등 대국민 이용시설*에 대한 재난 및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지침)의 제정 또는 수립의 적정성 *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며 다수의 국민·외부고객(민원인 등)이 이용하는 교육장, 관람장, 경기장, 체육관, 대합실 등 공용시설·공간 10.2. 대국민 이용 시설 및 시설물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누출, 붕괴, 지진 등 에 대비한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변경관리의 적정성 10.3. 대국민 이용 시설 및 시설물 주변의 비상대피로, 대피장소,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방송설비, 감지기, 개인보호구 등 시설·장비 관리 및 비상유도 훈련의 적정성 10.4. 대국민 이용시설 사용 국민을 위한 재난 및 사고예방 안내서, 팜플렛, 안전표지, 안내 방송, 안전교육 등 안전메시지 전달의 적정성
준비 사항	○ 재난 및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지침) ○ 대국민 이용시설의 화재·폭발·누출·붕괴·지진 등에 대비한 사고 시나리오 ○ 대국민 이용시설 비상유도 훈련계획
기타 사항	※ 현장 확인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등 확인(해당 기관에 한함)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10.1.득점 + 10.2.득점 + 10.3.득점 + 10.4.득점) ※ N = 10.1. ~ 10.4. 의 해당 수

11.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1. 공통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의 적정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11.2.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의 적정성 11.3.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전개・지원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11.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계획 작성 여부 11.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특성에 부합한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의 적정성 11.3. 공공기관 홈페이지, 방송, 캠페인, 경진대회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및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사용(구매)등을 통한 안전문화 지원 노력도
준비 사항	○ 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 ○ 4·4·4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회 및 실적 ○ 기타 캠페인, 대중매체 홍보 등 주요 추진사례
기타 사항	※ 대내·외 안전경진대회 등 수상내역(해당 기관에 한함, 원·하청 포함) ※ 4·4·4 안전점검의 날은 기관 특성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11.1.득점 + 11.2.득점 + 11.3.득점) ※ N = 11.1. ~ 11.3. 의 해당 수

[발주 안전보건관리]

1.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2. 발주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발주 계획 단계에서 공사 위험도를 고려한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설계 안전성 검토 등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 발주공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금액 산정 여부 1.2. 설계 안전성 검토(DFS) 활동의 적합 여부
평가 착안 사항	1.1. 발주 계획 시 안전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금액 산정을 위해 관련 규정(기준) 적용,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등 활동을 평가 ※ 공사 기간·금액 산정 주요 고려항목 : 위험도, 주말 및 공휴일 작업, 야간작업, 2인1조(밀폐, 중장비 등), 기상이변(강풍, 폭염, 미세먼지 등) 1.2. 설계 안전성 검토(DFS)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확인・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등 활동을 평가
준비 사항	○ 발주공사명, 공사금액, 시공자 등 기본 정보 목록 ○ 발주공사 공사기간·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기준) 및 실적, 발주공사 공사비 산정에 관한 규정(기준) 및 실적, 설계 안전성 검토(DFS) 관련 규정(기준) 및 실적 ○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실적 ○ 기타 발주공사 공사 위험도 반영 관련 계획 및 실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1.1.득점 + 1.2.득점 + 1.3.득점) ※ N = 1.1. ~ 1.2. 의 해당 수

2.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2. 발주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과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수준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2.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의 적합 수준 2.2. 설계자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2.3. 도급인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2.4.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활동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2.1. 건설공사 중점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유지 수준과 입찰 관련 안전보건 수준유지 방안 등 적합수준 2.2.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제공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주요 내용 적정성 검토, 안전보건활동 실적 등 적합수준 2.3. 설계안전보건대장 도급인 제공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주요 내용 적정성 유지 관리, 안전보건활동 실적 등 적합수준 2.4.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상태 및 현장 활동 기록 유지 및 내용의 적정성
준비 사항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대장 작성 단계의 안전보건 회의 등 활동 실적 ○ 기타 공사 계획단계의 안전보건활동 실적 등 ○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실적 및 관련 기록
기타 사항	○ 이 평가항목은 2019.6.1. 이후 착공하는 50억 원 이상 발주 건설공사에 한함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2.1.득점 + 2.2.득점 + 2.3.득점 + 2.4.득점) ※ N = 2.1. ~ 2.4. 의 해당 수

3. 시공자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2. 발주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발주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등의 활동 확인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3.1. 입찰 참여 제한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노력 수준 3.2. 적격 시공자 선정을 통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노력 수준
평가 착안 사항	3.1. 입찰 준비나 진행과정 중 중대재해 유발 등 안전보건관리 불량업체를 확인하고 입찰 참여 제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수준 3.2. 시공자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 또는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수준
준비 사항	○ 발주공사 입·낙찰 규정(기준) 및 시공자 선정 기준 및 실적 ○ 발주공사 계약서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3.1.득점 + 3.2.득점) ※ N = 3.1. ~ 3.2. 의 해당 수

4. 공사 안전보건감독 계획 및 수행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2. 발주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공사감독을 위한 매뉴얼과 감독수행 계획 내용의 적정성 및 수행 실적 확인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4.1. 공사 안전보건관리 수준 유지를 위한 공사감독 계획 수준 4.2. 공사감독자 교육 및 역량 적합 수준 4.3. 공사감독계획 이행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4.1. 발주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공사감독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합 수준 * "공사감독"이란 공사 작업사항 감독이 아닌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을 말함 4.2. 공사감독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와 역량 수준 4.3. 감독 계획에 준한 이행 수준의 적정성
준비 사항	○ 공사 안전보건감독 계획 ○ 공사감독 대상 교육 계획 및 실시 실적 ○ 공사감독 안전보건 관련 자격 및 경력 ○ 공사감독 이행 실적 및 기록
기타 사항	○ 안전보건 공사감독은 공사 시공(작업)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감독이 아님(시공 감독과 병행 수행 시 안전보건사항 감독에 대한 별도 기록 확인)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4.1.득점 + 4.2.득점 + 4.3.득점) ※ N = 4.1. ~ 4.3. 의 해당 수

5. 건설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2. 발주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간,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수준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5.1.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시 처리기준에 따른 이행 수준 5.2. 건설공사 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시 처리기준에 따른 이행 수준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관리 수준
평가 착안 사항	5.1.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의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수준 5.2. 설계변경의 요청 대상 작업의 유무 파악 및 이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수준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증액 등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마련 수준
준비 사항	○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지침 등) ○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규정(지침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 및 확인 실적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6.1.득점 + 6.2.득점 + 6.3.득점) ※ N = 5.1. ~ 5.3. 의 해당 수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1.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40
지표 정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 및 절차, 안전보건관리 수준의 적정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 도급계획 수립·검토 및 입찰공고 절차의 적정성 1.2. 적격 수급업체선정을 위한 참여업체 안전수준평가의 적정성 1.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후속조치 실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1.1. 도급 계획단계에서 작업의 위험성 검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기준을 포함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1.2.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수준평가 기준의 적정성 1.3. 선정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 실행계획의 적정성
준비 사항	○ 도급계획, 도급계약서, 도급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적격 수급업체 선정관련 안전수준평가 관련 서류 ○ 도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개선조치 실행계획
기타 사항	**※ 평가 당해 연도에 도급이 없는 경우,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분야 "해당무" 처리** ※ 도급(용역, 위탁포함)중 부수적이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은 **본 지표에 한하여 "해당무" 처리** * 부수적·보조적 사업 : 경비, 단순청소, 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위탁 등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40/N × (1.1.득점 + 1.2.득점 + 1.3.득점) ※ N = 1.1. ~ 1.3 의 해당 수

2. 수급업체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행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30
지표 정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와 합동·순회 점검 등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2.1.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정성 2.2. 작업장 순회점검의 적정성 2.3.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의 적정성 2.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의 적정성 2.2. 도급사업 종류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작업장 순회점검 적정성(작업계획서 준수여부 확인 등) 2.3. 원・하청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점검반 구성 및 점검주기의 적정성 2.4. 도급사업 안전관리담당 지정운영, 원·하청 상호간 안전보건정보 공유 등
준비 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구성·운영 기록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관련 기록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기록
기타 사항	※ 도급(용역, 위탁포함)중 부수적이나 보조적인 사업*을 도급을 준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은 **본 지표에 한하여 "해당무" 처리** * 부수적·보조적 사업 : 경비, 단순청소, 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 운행, 구내식당 위탁 등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30/N × (2.1.득점 + 2.2.득점 + 2.3.득점 + 2.4.득점) ※ N = 2.1. ~ 2.4. 의 해당 수

3.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수급업체에 교육 및 위생시설 등 인프라 지원 및 비상시 통일된 경보체계 운영 및 대응훈련의 적정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3.1. 수급업체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지원의 적정성 3.2.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응훈련의 적정성 3.3. 적정 위생시설 확보 여부
평가 착안 사항	3.1. 수급업체 안전보건 교육장소, 자료 등 제공, 교육 횟수, 시간 등 적정성 3.2. 비상상황에 대비한 원·하청 간 통일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적정성 3.3. 휴게, 세면·목욕, 수면시설 등 현황
준비 사항	○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관련 지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보체계 등 위험상황 대비 계획 및 대피 훈련 등 기록 ○ 수급업체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 세면·목욕, 수면시설 등 현황
기타 사항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3.1.득점 + 3.2.득점 + 3.3.득점) ※ N = 3.1. ~ 3.3. 의 해당 수

[현장 안전보건관리]

1. 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4. 현장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안전관리 수행 및 작업장 정리정돈 등 작업장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수준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적정성 1.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적정성 1.3. 청사관리, 청소, 정비·보수 등의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1.1. 화재·폭발·누출, 붕괴·도괴, 추락, 끼임, 질식 등 중대재해 및 사회적 이슈 사고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1.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적정성 1.3. 청사관리, 청소, 정비·보수 등의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적정성(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내화학성 장갑, 안전대, 방진·방독 마스크 등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준비 사항	○ 화학물질 취급목록(현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 등
기타 사항	○ 주요 현장 및 근로자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1.1.득점 + 1.2.득점 + 1.3.득점) ※ N = 1.1. ~ 1.3. 의 해당 수

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4. 현장 안전보건관리	10
지표 정의	고정 사용 또는 반입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활동 수준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2.1.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적정성 2.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실시 및 시기의 적정성 2.3.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2.1. 기계실, 보일러실, 공조실 등에서의 사용 또는 반입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2.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련법에 의한 법정검사 실시, 검사필증 부착상태, 방호장치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2.3. 기계·기구·설비(전기설비 포함)에 대한 정비·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작동스위치 잠금장치 설치(Lock-Out Tag-Out) 등의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여부
준비 사항	○ 기계·기구·설비 목록 및 배치도 ○ 법정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 목록 ○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
기타 사항	○ 주요 현장 및 근로자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2.1.득점 + 2.2.득점 + 2.3.득점) ※ N = 2.1. ~ 2.3. 의 해당 수

3.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4. 현장 안전보건관리	10
지표 정의	전기기계 · 기구 등 사용에 따른 감전 예방, 예비전원 확보 등 활동 수준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3.1.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의 적정성 3.2. 방폭전기기계 · 기구 선정 및 적정 사용, 유지·보수의 적정성 3.3. 비상발전기 또는 UPS 등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3.1.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충전부 방호, 접지, 감전 방지 조치 등) 3.2. 방폭지역 특성에 부합한 방폭전기기계 · 기구 선정 및 적정 사용, 유지·보수의 적정성 3.3. 비상발전기 또는 UPS 등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점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의 안전 관리 적정성
준비 사항	○ 방폭지역 구분도, 방폭전기기계 · 기구 선정 기준 등 ○ 비상전원 부하리스트 등 ○ 점검일지 등
기타 사항	○ 주요 현장 및 근로자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3.1.득점 + 3.2.득점 + 3.3.득점) ※ N = 3.1. ~ 3.3. 의 해당 수

4. 추락 · 낙하 · 붕괴 등 시설물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4. 현장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관리대상 시설물에서의 추락 · 낙하 · 붕괴 예방조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4.1. 시설물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조치 적정성 4.2. 시설물의 붕괴 등 위험 방지조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4.1. 시설물의 개구부 관리, 안전대 부착설비, 승강설비, 비계 작업발판 설치 등 작업현장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 조치 4.2. 시설물의 기둥, 보, 외벽 등 주요 구조부 손상, 균열, 침하 여부 등 붕괴 위험 방지 조치의 적정성
준비 사항	○ 주요 시설물 배치도
기타 사항	○ 주요 시설물 및 근로자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4.1.득점 + 4.2.득점) ※ N = 4.1. ~ 4.2. 의 해당 수

5.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4. 현장 안전보건관리	10
지표 정의	정기점검 등을 통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활동 수준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5.1.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적정성 5.2. 인화성액체·가스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 5.3. 소화설비 적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5.1.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작업장의 화재·폭발 예방조치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5.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C IEC 60079-10-1:2015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검토 및 구분도 작성 5.3. 건축물, 전기실 및 전산실, 통신기기실, 화학설비, 건조설비 등 장소별 적용 가능한 소화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적정성
준비 사항	○ 인화성액체 및 인화성가스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목록(현황), 위험지역의 폭발위험장소 검토서류 및 구분도, 안전검사 결과 문제점 개선 조치 결과 문서(서류 등) 등 ○ 소화설비 선정 관리 지침, 소화설비 배치도, 소화약제 종류 현황 등
기타 사항	○ 화학물질 보관장소 등 일부 현장 확인을 통한 위험방지 조치 수준 평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5.1.득점 + 5.2.득점 + 5.3.득점) ※ N = 5.1. ~ 5.3. 의 해당 수

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4. 현장 안전보건관리	20
지표 정의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에 의한 사고사망 예방활동 수준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6.1.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 수준 6.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6.1. 화학물질 취급장소에 환기시설(국소배기 또는 전체환기) 설치 및 가동에 따른 정상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실시 수준 6.2. 지하 물탱크 청소나 정화조 청소 또는 맨홀 청소 등의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 밀폐공간 작업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중 작업정보, 근로자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시작 전(출입 전)·중 환기, 비상연락체계 등 관리 상태 확인
준비 사항	○ 화학물질 취급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설치 대상인 환기시설 설치 현황, ○ 밀폐공간 파악 현황 등
기타 사항	○ 화학물질 취급장소 및 밀폐공간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사고사망 예방 평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20/N × (6.1.득점 + 6.2.득점) ※ N = 6.1. ~ 6.2. 의 해당 수

7. 작업환경 관리 수준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수준 (Activity Level)	Ⓒ-4. 현장 안전보건관리	10
지표 정의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수준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7.1. 위생시설 설치 수준 7.2. 건강위험 긴급상황 응급조치 적정성 7.3. 작업환경측정 실시 수준 7.4. 특수건강진단 실시 수준
평가 착안 사항	7.1.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시설(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 설치 및 필요 용품 등 구비 수준 7.2. 건강위험 긴급상황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설치·점검 및 관리, 응급상황 대응의 적정성 7.3.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 실시 수준(결과관리, 유해인자 관리 등) 7.4.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경우 실시 여부(결과관리, 진단대상 관리 등)
준비 사항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기타 사항	○ 위생시설, 화학물질 취급장소 등 현장 확인을 통한 평가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10/N × (7.1.득점 + 7.2.득점 + 7.3.득점 + 7.4.득점) ※ N = 7.1. ~ 7.4. 의 해당 수

4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1. 성과측정 및 시정조치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	80
지표 정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검토, 성과측정 및 환류를 통한 활동수준을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1.1. 안전보건활동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의 적정성 1.2. 시정조치 및 개선이행의 적정성
평가 착안 사항	1.1.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계획 수립, 이행 및 그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추가 개선조치 실시, 경영자 검토 실시 적정성 1.2. 안전보건활동 관련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시정조치, 현황관리 적정성
준비 사항	○ 자체 안전보건활동 및 외부 지적사항(국정감사, 상위기관 감독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토 관련 서류,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계획서 및 실행 내역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관련 법령별 시정조치 현황표(필수 작성·제출)>

순번	법령 (조문)	소관 부처	점검 기관	지적사항					시정조치 현황			
				일자	내용	건수	벌칙/과태료	금액 (천원)	개선 여부	개선 일자	개선 내용	미개선 사유
1	산업안전 보건법 (제10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9.10.15.	산재은폐	10	벌금	3,200	개선	19.10.20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
2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19.10.15.	유해위험 방지계획 서관련 명령위반	1	징역1년	-	개선	-	명령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	-
3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19.10.15.	고압가스 안전검사 미실시	3	과태료	50	미개선	-	-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상태(20.1월 검사 예정)

※ 상기 현황은 정부경영평가 참조사항으로 허위사실 기재, 누락 등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 조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따른 귀책사유는 해당 기관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모니터링·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의 문제점 개선계획 수립·시행 관련 문서 등

기타 사항	○ 안전보건활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검토를 통한 개선으로 안전보건경영 목표 달성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80/N × (1.1.득점 + 1.2.득점) ※ N = 1.1. ~ 1.2. 의 해당 수

2.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 평가지표(KPI) 개요

평가분야		배점
대분류	중분류	
Ⓓ안전보건활동 성과 (Achievement)	-	70
지표 정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및 산업재해 발생수준 및 사고사망자수 감소성과를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착안사항

세부 평가 내용	2.1.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설정의 적정성 2.2. 아차사고(Near-miss) 발굴 및 개선 노력의 적정성 2.3. 산업재해 발생수준 및 사망자수 감소 성과
평가 착안 사항	2.1. 안전관리대상 원·하청 명단 파악 및 기관 특성분석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감소목표 설정의 적정성 2.2. 아차사고 등 발굴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을 통한 발굴 및 현황관리, 원인분석을 통한 예방대책 마련 및 개선이행, 원·하청 근로자에 관련 사례 공유 2.3. 산업재해 발생수준 및 사고사망자수 감소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 목표달성도 = 산식 ❶점수 × 0.5점 + 산식 ❷점수 × 0.5점 ※ 산식❶ 및 산식❷ 계산값 최대치는 1로 제한함 ※ 산식❶의 분자와 분모가 “0”인 경우 또는 분모가 “0”인 경우 계산값은 1로 적용함 < 산식❶ > = (’19년 평가그룹 평균재해율) / (’19년 해당기관 재해율) < 산식❷ > = (’18년 해당기관 사고사망자수 - ’19년 해당기관 사고사망자수) / (’18년 해당기관 사고사망자수) ※ 계산값이 - 인 경우 0을 적용함
준비 사항	○ 안전기본계획,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목표 설정 방법 등 관련 서류, 아차사고 등 안전사고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내역 등
기타 사항	○ 아차사고 등 안전사고 적극적 발굴을 통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노력

평가 산식	(정규화 지표 점수) = 70/N × (2.1.득점 + 2.2.득점 + 2.3.득점) ※ N = 2.1. ~ 2.3. 의 해당 수

참 고 자 료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7호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19.9.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대상 및 방법
3.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수행)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지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가반 구성·운영 및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내용)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안전보건체제
2. 안전보건활동 계획
3. 안전보건활동 수준
4. 안전보건활동 성과

5.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

제7조(평가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정한다.

제8조(평가계획 등의 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계획, 제6조의 평가내용, 제7조의 평가시기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지방법은 문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협조)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장소의 제공
2. 경영진 및 안전보건관계자 면담
3.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 시 현장 안내
4. 기타 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제3장 평가결과 심의 및 활용

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 등) ①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수행 후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의 심의
2.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평가담당부서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최종 평가결과의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최종 심의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행정부처의 장이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해당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보 칙

제15조(정보누설 금지 등)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술기준)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법령, 국제규격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

유 형		기 관 명
공기업 (36개)	공기업Ⅰ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Ⅱ (26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93개)	기금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3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43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MEMO

MEMO

MEMO

MEMO

MEMO